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의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근거 마련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84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역의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근거 마련	3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2. 19.
3. 회 부 일 : 2026. 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 및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인구·산업·외교 환경의 변화로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학생의 출신국과 사용 언어가 빠르게 다양화·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연동하여 국가 차원의 교류·협력·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언어에 대한 교육 수요가 지역단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통령령에 의한 지정 중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략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여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관할 지역의 다문화학생 등의 국적·언어 구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 교육·인력양성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국가 전략언어 육성 체계를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완·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역의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특수외국어의 정의에 국가 주요 정책 수요를 포함하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교육감이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 교육·인력양성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국가 전략언어 육성 체계를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완·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u>국가발전을</u>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국가발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를</u> ----- -----.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③ (생략) <u><신설></u>	1. ~ 6. (현행과 같음) 7. <u>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8조의2(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 등)</u> ① <u>교육감은 관할 지역 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의 국적, 사용 언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최근 5년간(2021~2025년) 이주배경학생은 2021년 16만 58명에서 2025년 20만 2,20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출신국가를 기준으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적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경기도 5만 6,961명부터 세종특별자치시 886명까지 전국에 걸쳐 재학하고 있음.

[이주배경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베트남	중국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계)	중앙 아시아	캄보디아	일본	러시아 및 중앙 아시아 (한국계)	몽골	러시아	태국	미국	유럽	중동	대만	아프리카	인도 네시아	기타	합계
2021	51,533	37,805	15,985	13,175	4,722	6,288	8,286	3,975	3,525	2,705	2,218	1,633	981	698	902	618	621	4,438	160,058
2022	54,722	41,009	16,210	11,914	5,559	6,798	7,891	4,926	3,724	2,772	2,362	1,729	1,084	835	935	684	666	4,825	163,645
2023	58,136	44,587	16,538	11,561	6,661	7,389	7,633	6,713	4,175	3,115	2,514	1,965	1,207	1,046	975	779	704	5,450	181,178
2024	61,333	49,287	16,805	11,227	7,662	7,867	7,391	7,690	4,610	3,548	2,855	2,106	1,351	1,206	1,048	895	776	6,157	193,814
2025	63,357	53,129	16,872	10,034	9,190	8,178	7,234	7,080	5,059	4,063	3,114	2,258	1,373	1,285	1,143	1,046	827	6,966	202,208

구분	베트남	중국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계)	중앙 아시아	캄보디아	일본	러시아 및 중앙 아시아 (한국계)	몽골	러시아	태국	미국	유럽	중동	대만	아프리카	인도 네시아	기타	합계
서울	3,924	8,009	1,309	2,792	445	408	1,200	143	1,040	255	253	474	224	129	264	175	92	866	22,002
부산	3,412	1,455	757	150	205	327	402	97	118	246	91	107	98	30	93	22	57	334	8,001
대구	2,733	1,147	558	125	280	456	167	192	116	113	107	102	59	31	28	34	32	273	6,553
인천	2,789	5,502	797	652	1,250	230	393	641	396	590	184	130	115	449	127	121	44	595	15,005
광주	1,920	791	536	52	404	324	173	517	126	169	80	35	49	16	6	34	18	153	5,403
대전	1,448	711	590	63	85	278	116	33	142	49	70	55	35	31	28	26	28	171	3,959
울산	1,523	1,085	382	110	138	170	133	34	82	55	71	26	36	34	20	11	17	149	4,076
세종	270	206	93	22	55	41	59	8	11	9	8	36	15	1	16	2	6	28	886
경기	10,810	21,574	3,334	4,355	2,592	1,207	2,130	2,607	1,554	1,270	944	791	410	315	313	431	215	2,109	56,961
강원	2,231	741	663	117	193	406	225	49	103	89	126	60	25	12	29	14	17	149	5,249
충북	2,960	1,493	837	178	456	313	189	649	259	218	160	34	37	27	25	22	13	247	8,117
충남	4,562	2,665	1,451	503	1,312	601	350	1,009	243	487	202	88	29	31	30	31	64	346	14,004
전북	4,305	1,502	1,122	171	156	747	344	45	195	40	138	60	28	37	29	16	24	285	9,244
전남	5,615	1,390	1,573	167	184	965	443	31	246	56	237	53	22	21	29	17	39	202	11,290
경북	6,532	1,954	1,192	246	519	748	242	541	209	141	210	92	49	38	32	44	74	333	13,196
경남	7,163	2,015	1,195	199	860	829	545	471	179	260	199	73	96	70	46	38	80	515	14,833
제주	1,160	889	483	132	56	128	123	13	40	16	34	42	46	13	28	8	7	211	3,429
합계	63,357	53,129	16,872	10,034	9,190	8,178	7,234	7,080	5,059	4,063	3,114	2,258	1,373	1,285	1,143	1,046	827	6,966	202,208

주: 1. 이주배경(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 국제결혼가정 자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
 -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2. 부모출신국가는 2025년 기준 학생 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렬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중 행정구역별 부모출신국가별 다문화(유형별) 학생 수, 각 연도

□ 개정안은 이주배경학생 수가 증가하고 출신 국가와 사용 언어가 다양화되어,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언어에 대한 교육 수요가 지역 단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수외국어의 정의

에 국가 주요 정책 수요를 포함하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교육감이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 교육·인력양성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국가 전략언어 육성 체계를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완·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특수외국어 지정 목적에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 추가

- 개정안은 제2조제1호 특수외국어의 정의에서 특수외국어 지정 목적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를 추가함.

개정안은 지역 단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여 특수외국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기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임.

- 현행법령에서 특수외국어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외국어교육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¹⁾ 해당 언어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정치·경제·외교·문화, 정부개발원조(ODA),

1) 「특수외국어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특수외국어교육법 시행령」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외국어교육 진흥 차원에서, 한국과의 정치·경제 협력 가능성, 학문적 수요,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하고, 대체 언어가 없는 것으로 5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²⁾ 고등교육기관에서 24개 언어,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2개 언어 교육과정에 교원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³⁾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법령에 규정된 53개 언어 이외에 추가로 지정 요청이 있거나 지정을 검토 중인 특수외국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개정안에 따라 특수외국어 지정 목적에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가 추가될 경우, 추후 특수외국어 지정시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특수외국어 정의에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를 반영할 경우, 정치·경제·외교·문화, 정부개발원조, 외국어 교육 진흥 등 국가 정책과 연계된 언어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 포함

- 개정안은 제5조제2항에서 기본계획 포함 사항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2) 【참고자료 1】 특수외국어의 범위 및 해당 언어 사용 국가 참조

3) 【참고자료 2】 고등교육기관 특수외국어 교원 현황, 【참고자료 3】 초·중·고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현황 참조

개정안은 다양한 교육 방식과 수업 개설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에서,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⁴⁾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초·중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⁵⁾

□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외에도 특수외국어과정이 개설된 대학(원)⁶⁾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특수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특수외국

4) 「**특수외국어교육법**」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3.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개발 지원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참고자료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현황 참조

6) 【참고자료 5】 국내 대학(원) 특수외국어 개설 현황 참조

어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 지정·운영 근거 신설

- 개정안은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초·중등학교 다문화학생등⁷⁾의 외국어를 교육하는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현재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은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⁸⁾ 다문화 밀집 학교 등과 연계하거나,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다문화학생등의 외국어를 교육하는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의 지정·운영 근거가 신설될 경우, 이주배경학생이 상대적으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언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해당

7)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언어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일반 학생은 다양한 나라의 언어·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⁹⁾

[특수외국어 지원 관련 전문교육기관 업무협약 사례]

전문교육기관	업무협약 대상	주요내용
단국대	충남온라인학교	• 고교학점제 지원 * 2025년 2학기 고등학생 17명 참여
부산외대	전남교육청국제교육원	• 초·중등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한국외대	서울시교육청	• 이주배경학생 지원

자료: 교육부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인력양성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등의 조항 신설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주배경학생 지원 체계 구축보다는 지역 내 특수외국어교육 수요에 따라 학교 내 외국어 선택과목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보다 실효성이 있으며, 교육청은 센터 등의 시설 투자보다 이주배경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

9) 참고로, 초·중등학교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의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외국어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2026.3.24.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된 바 있음.

참고 1

특수외국어의 범위 및 해당 언어 사용 국가

(단위: 개국)

지역	특수외국어	해당언어 사용국가	국가 수
1. 중동·아프리카 (12개 언어)	1. 아랍어	알제리/바레인/코모로/지부티/이집트/이라크/요르단/쿠웨이트/레바논/리비아/모리타니/모로코/오만/팔레스타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소말리아/수단/튀니지/UAE/예멘/시리아/에리트리아/차드	24
	2. 터키어	터키/사이프러스	2
	3. 아제르바이잔어	아제르바이잔	1
	4. 이란어	이란/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	3
	5. 파슈토어	아프가니스탄	1
	6. 다리어	아프가니스탄	1
	7. 히브리어	이스라엘	1
	8. 하우사어	가나/니제르/나이지리아	3
	9. 스와힐리어	탄자니아/케냐/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5
	10. 줄루어	남아공	1
	11. 르완다어	르완다	1
	12. 암하라어	에티오피아	1
2. 유라시아 (7개 언어)	13. 카자흐어	카자흐스탄	1
	14. 우즈베크어	우즈베키스탄	1
	15. 키르기스어	키르기스스탄	1
	16. 우크라이나어	우크라이나	1
	17. 투르크멘어	투르크메니스탄	1
	18. 타지키스탄어	타지키스탄	1
	19. 몽골어	몽골	1
3. 인도·아세안 (14개 언어)	20. 힌디어	인도/피지	1
	21. 우르두어	파키스탄	1
	22. 산스크리트어	네팔/인도	2
	23. 네팔어	네팔	1
	24. 벵골어	방글라데시	1
	25. 신할리즈어	스리랑카	1
	26. 베트남어	베트남	1
	27. 말레이시아어	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다루살람	3
	28.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	1
	29. 태국어	태국	1
	30. 미얀마어	미얀마	1
	31. 크메르어	캄보디아	1
	32. 라오스어	라오스	1
	33. 타갈로그어	필리핀 일부(약 6500만명 사용)	1
4. 유럽 (18개 언어)	34. 폴란드어	폴란드	1
	35. 루마니아어	루마니아	1
	36. 헝가리어	헝가리	1
	37. 체코어	체코 공화국	1
	38. 슬로바키아어	슬로바키아	1
	39. 세르비아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세르비아/코소보	3
	40. 크로아티아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크로아티아어	2
	41. 라트비아어	라트비아 공화국	1
	42. 벨라루스어	벨라루스	1
	43. 조지아어	조지아	1

지역	특수외국어	해당언어 사용국가	국가 수
	44. 그리스어	그리스/사이프러스	2
	45. 불가리아어	불가리아	1
	46. 이탈리아어	산마리노/스위스/이탈리아	3
	47. 네덜란드어	네덜란드/벨기에/수리남	3
	48. 노르웨이어	노르웨이	1
	49. 덴마크어	덴마크	1
	50. 스웨덴어	스웨덴	1
	51. 핀란드어	핀란드	1
5. 중남미 (2개 언어)	52. 브라질어	브라질	1
	53. 포르투갈어	포르투갈/앙골라/모잠비크/카보베르데/동티모르/ 기니비사우/브라질/상투메프린시페	8

주: 특수외국어는 「특수외국어교육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에 규정된 언어임

자료: 교육부

참고 2

고등교육기관 특수외국어 교원 현황

(단위: 명)

지역	언어	교원 수			비고
		전임	비전임	합계	
1. 중동·아프리카	1. 아랍어	7	21	28	아랍어과/아랍어통번역학과/아랍전공
	2. 터키어	7	9	16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터키어전공/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3. 아제르바이잔어	4	7	11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4. 이란어	4	9	13	페르시아어·이란학과
2. 유라시아	5. 우크라이나어	3	-	3	
	6. 몽골어	4	10	14	몽골어과/아시아중동학부 몽골학전공/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3. 인도·아세안	7. 베트남어	14	28	42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베트남비즈니스전공)/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베트남어과/베트남어전공/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8. 말레이시아어	13	20	33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전공
	9. 인도네시아어	16	33	49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전공
	10. 태국어	9	15	24	태국어과/태국어전공/태국어통번역학과
	11. 미얀마어	3	3	6	
4. 유럽	12. 폴란드어	3	6	9	
	13. 루마니아어	3	7	10	
	14. 헝가리어	3	7	10	
	15. 체코어	4	6	10	체코슬로바키아어과
	16. 슬로바키아어	4	9	13	체코슬로바키아어과
	17. 세르비아어	4	3	7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18. 크로아티아어	4	13	17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19. 그리스어	6	5	11	그리스·불가리아학과
	20. 불가리아어	6	5	11	그리스·불가리아학과
	21. 이탈리아어	6	21	27	이탈리아어과/이탈리아어전공/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22. 네덜란드어	2	5	7	
5. 중남미	23. 브라질어	6	10	16	브라질학과/유럽중남미학부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포르투갈(브라질)어전공
	24. 포르투갈어	8	17	25	유럽중남미학부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포르투갈(브라질)어전공/포르투갈어과
합계		143	269	412	

주: 1.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의미

2. 2024년도 하반기 고등교육통계 기준

3. 지역 및 언어의 연번과 순서는 「특수외국어교육법 시행령」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별표를 기준으로 함(교원이 없는 경우는 삭제)

4. 일부 학과의 경우 다개국어를 전공하고 있어 중복사항 존재(비고 참조)

자료: 교육부

참고 3

초·중·고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현황

연번	지역	학교명	언어	비고
1	서울	경기 고등학교	아랍어	· 서울시 관내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점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 학생, 학부모, 교사 희망에 따라 아랍어1을 개설하여 학기별 매주 월요일 방과 후에 운영(17:30~20:20)
2	광주	광덕 고등학교	아랍어	· 제2외국어로 아랍어 개설 · 2학년 학기별 3학점으로 6학점, 3학년 학기별 4학점으로 8학점, 총 14학점 이수 가능 · 담당 교원: 1명
3	울산	울산외국어 고등학교	아랍어	· 아랍어과 학년별 1개 학급 총 65명 재학 중 · 1학년 학기별 6학점으로 12학점, 2학년 학기별 8학점으로 16학점, 3학년 학기별 7학점으로 14학점, 총 42학점 편성 · 담당 교원: 2명
4	충북	충북외국어 고등학교	베트남어	· 영어-베트남어과 학년별 1개 학급 총 59명 재학 중 · 1학년 41학점, 2학년 44학점, 3학년 44학점으로 총 129학점 편성 · 담당 교원: 3명(원어민 1명 포함)
5	충남	충남외국어 고등학교	베트남어	· 베트남어과 학년별 1개 학급 총 55명 재학 중 · 1학년 42학점, 2학년 44학점, 3학년 44학점으로 총 130학점 편성 · 담당 교원: 4명(원어민 2명 포함)
6	경북	경주에일 고등학교	베트남어	· 제2외국어로 베트남어 개설 · 1학년 각 학기별 3학점으로 총 6학점 이수 가능(1학년 109명 재학 중) · 담당 교원: 1명
7	경북	김천 고등학교	베트남어	· 제2외국어로 베트남어 개설 · 2학년 학기별 3학점으로 총 6학점 이수 가능(2학년 249명 재학 중) · 담당 교원: 1명

주: 상기 내용은 해당 학교 누리집 등을 기반으로 작성

자료: 교육부

참고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현황

○ 전문교육기관 개요

구분	내용
목적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업무 수행(인재 양성 및 국민 교육 기회 제공)
근거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기간	• 3년(3년마다 평가 실시 후,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 연차별 사업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 ※ 단, 1차년도 사업은 협약 시점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사업경과	• 1차(2018~2020년) → 2차(2021~2023년) → 3차(2024~2026년) ※ 2016년 법 제정 이후, 2018년부터 전문교육기관을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2025년부터 단국대 단독 운영), 부산외대, 한국외대로 지정·운영
운영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시행 - 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관리 ※ 사업관리위원회·건설팀단 운영, 연차(종합)평가, 사업비 집행·정산 등 관리

자료: 교육부

○ 전문교육기관 현황

전문교육기관명	중점지원언어
단국대학교 (4개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u>포르투갈어·브라질어</u>
부산외국어대학교 (10개어)	라오스어, 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크메르어, 태국어, 터키어, 힌디어
한국외국어대학교 (21개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라오스어, 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이란어, 이탈리아어, 체코어, 카자흐어, 크로아티아어, 태국어, 터키어, <u>포르투갈어·브라질어</u> ,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주: 밑줄은 하나의 언어로 간주함

자료: 교육부

○ 전문교육기관 주요 사업

추진 과제	세부 내용
초·중등학생 언어·문화체험	초·중등학교 수업·체험 교육 지원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프로그램 운영
대학(원)생 전공 교육	특수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통·번역 인재 양성
	전공 간 연계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 운영
	통·번역 동아리 등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수외국어 국·내외 연수 지원
	장학금 및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일반인 평생 교육	K-MOOC 강좌 개발·운영(2018년 부터, 50강좌)
	스마트 콘텐츠(유튜브, 앱 등) 개발·제작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프로그램 운영
	특수외국어 평생교육 운영(일반인/기관·기업 대상)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원격연수 운영
산업 분야 지역전문가 양성	기업 연계 인턴십,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창업 관련 특강, 캠프 운영 등
다문화 가족 서비스 지원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풀 구축·운영
	교육청, 지자체 연계 통·번역 지원
	가족센터 연계 원어민(이중언어) 강사 교육 지원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지원	공공기관 특수외국어 통·번역 지원
	통·번역 수요 공공기관 발굴 등 지역사회 연계 강화
	기관 연계 특수외국어 교육, 문화 행사 운영
특수외국어 능력 평가	특수외국어능력평가지험 홍보·활용·지원
	어학능력 평가 체계화 노력

자료: 교육부

참고 5

국내 대학(원) 특수외국어 개설 현황

구분		학교명 (전공 언어수)	학과(부) 및 전공언어
대학	외국어대	부산외대 (13)	아랍어, 튀르키예어, 힌디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크메르어, 라오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브라질어
		한국외대 (33)	아랍어과(아랍어),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어과(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페르시아어·이란학과(이란어), 아프리카학부(하우사어, 스와힐리어, 줄루어, 암하라어), 중앙아시아학과(카자흐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과(우크라이나어), 몽골어과(몽골어), 인도어과(힌디어), 베트남어과(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학과(태국어, 라오스어), 폴란드어과(폴란드어), 루마니아어과(루마니아어), 헝가리어과(헝가리어), 체코·슬로바키아어과(체코어, 슬로바키아어), 네덜란드어과(네덜란드어),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그리스·불가리아학과(그리스어, 불가리아어), 이탈리아어과(이탈리아어), 스칸디나비아어과(덴마크어, 스웨덴어), 포르투갈어과(브라질어, 포르투갈어)
	일반대	단국대(5)	아시아중동학부(아랍어, 몽골어, 베트남어), 유럽중남미학부(브라질어, 포르투갈어)
		명지대(1)	아시아·중동어문학부(아랍어)
		서울대(9)	아시아언어문명학부(아랍어, 터키어, 이란어, 힌디어, 산스크리트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영산대(1)	글로벌학부(베트남어)
		조선대(1)	아시아언어문화학부(아랍어)
	기타	사이버 한국외대(2)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대학원	외국어대	부산외대(1)	한·베트남어번역학과(베트남어)
		한국외대 (31)	중동언어·문화학과(아랍어, 터키어, 이란어),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아제르바이잔어,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아프리카어문학과(하우사어, 스와힐리어, 줄루어, 암하라어), 인도-아세안어문번역학과(힌디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라오스어), 고전어문·문화학과(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 동유럽어문학과(폴란드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불가리아어), 이어이문학과(이탈리아어), 스칸디나비아어문학과(덴마크어, 스웨덴어), 포어포문학과(브라질어, 포르투갈어)
	일반대	단국대(4)	몽골학과(몽골어), 중동·아프리카학과(아랍어), 유럽어문학과(브라질어, 포르투갈어)
		명지대(1)	아랍지역학과(아랍어)
		서울대(9)	아시아언어문명학부(아랍어, 터키어, 이란어, 힌디어, 산스크리트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자료: 교육부